

도시관리계획(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서초구 양재동 261-2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하천-중복결정, 방수설비-신설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·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26일
서 초 구 청 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서초구 양재2동 빗물펌프장 신설과 관련, 양재천 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그 부지와 함께 양재천(하천)과 일부 중복되는 방수설비 결정을 위해, 도시계획시설(하천-중복결정, 방수설비-신설)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
2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가. 도시계획시설(하천) 결정(변경)

- 도시계획시설(하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			연장(m)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점	종점	주요 경과지				
기정	—	하천	양재천 (지방2급하천)	우면동	탄천 합류점	—	7,900 (폭100~200m)	732.492.0	79.08.26 (서고 제84호)	—
변경	—	하천	양재천 (지방2급하천)	우면동	탄천 합류점	—	7,900 (폭100~200m)	732.492.0	79.08.26 (서고 제84호)	방수설비 중복결정 (1,609.2㎡)

- 도시계획시설(하천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결정 내용	결정 사유
—	하천	지방2급하천	•방수설비 중복결정 — 면적: 1,609.2㎡	•양재2동 빗물펌프장 신설을 위한 하천구역 내 방수설비 중복결정

나. 도시계획시설(방수설비) 결정(신설)

- 도시계획시설(방수설비) 결정(신설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신설	-	방수설비	빗 물 펌프장	양재동 261-22	-	증) 2,563.1㎡	2,563.1	-	하천 중복결정 (1,609.2㎡)

○ 도시계획시설(방수설비) 결정(신설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결정 내용	결정 사유
-	방수설비	빗물펌프장	●방수설비(빗물펌프장) 신설 - 면적: 2,563.1㎡	●양재2동 일대 침수 해소를 위한 빗물펌프장 설치

※ 기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없음

3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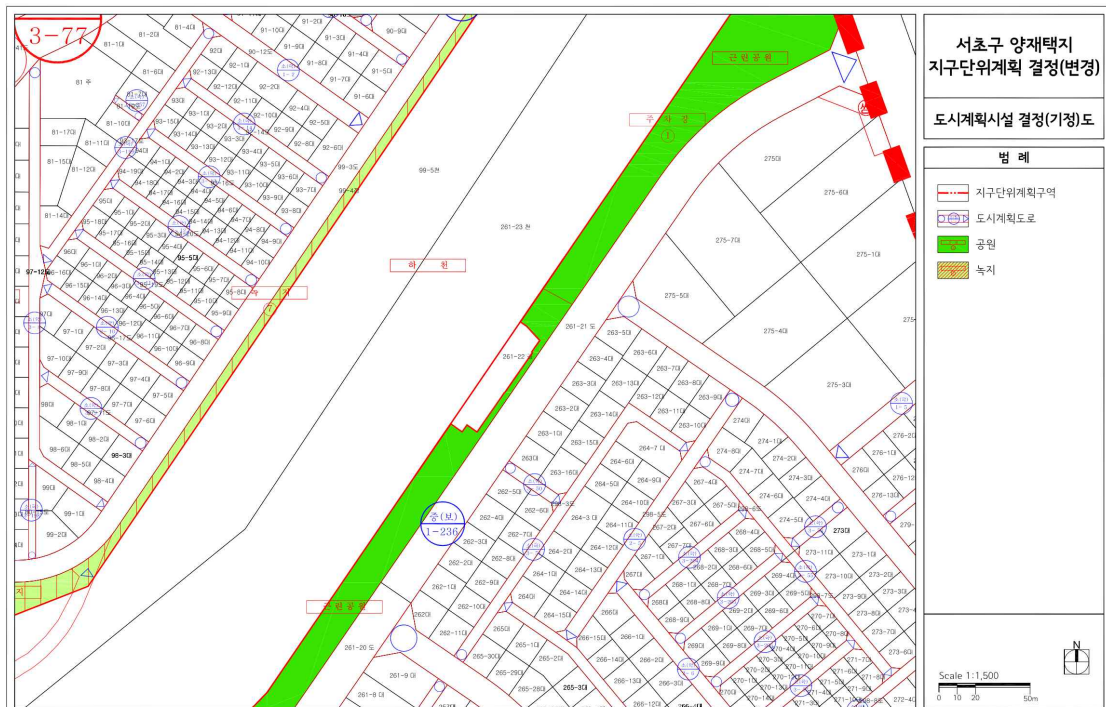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열람장소 : 서초구 도시계획과(☎02-2155-6782)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

[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]



□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

[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]

